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금)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종갑 의원외 13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신중갑의원 외 13
- 제안일 : 2022. 9. 8.
- 회부일 : 2022. 9. 14. (의안번호 : 22-100)

2. 제안이유

-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에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제6조)
- 종전의 (제4조)의 제목 “(공개)”를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변경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 제13조)
- 용역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 제18조)

4.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중갑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 ~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제6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에는 종전의 (제4조)의 제목 “(공개)”를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변경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8조 ~ 제13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 제18조)에는 용역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내용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 9. 13. ~ 2022. 9. 19.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중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2022. 9. 19. 제출)로부터 공개·관리 대상 정책연구용역 범위확대,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시점을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2개월 이내로 제한, 위원회의 관리·감독 역할과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정책연구용역 평가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명시 규정을 제안하는 의견제출을 받았음.

○ 검토의견으로는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용역의 추진계획 및 결과물 공개 시점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제4조(목적, 정의, 적용범위, 공개)만이 제정되어 연구 과제 선정의 자율성이 부여됐지만,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과제 선정의 중복 여부 및 유사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정을 통해 필요한 대상 과제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최근 4년(19년~22년 현재) 12억 1천 8백만 원의 금액이 정책연구용역 발주 금액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상황의 점검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므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용역비 책정과 연구용역 방식의 조정 그리고 타당성, 유사성, 중복성 등을 검토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며, 용역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활용 사항을 점검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별표 2]

정책연구용역발주내역(2019년~2022년현재)

(단위 : 원)

연번	연구 용역명	계약금액	발주부서
1	마포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1,945,000	아동청년과
2	마포구 여성정책 인식조사 연구용역	36,887,000	여성가족과
3	협치회의 분과 구성 및 협치조례 개정 연구용역	7,000,000	마포1번가연구단
4	마포복지재단 설립관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900,000	복지정책과
5	마포구 디자인출판스마트앵커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2,000,000	도시계획과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연구용역	77,440,000	일자리경제과
7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92,400,000	전산정보과
8	아동친화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49,500,000	가정복지과
9	마포도시문제 해결포럼 지역조사 연구용역	20,000,000	마포1번가연구단
10	마포홍대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38,644,690	관광과
11	마포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46,000,000	노인장애인과
12	마포구 주거지 유형별 근린환경의 인지건강디자인 진단 연구용역	2,000,000	마포1번가연구단
13	마포구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35,218,000	지역경제과
14	상호이해를 통한 공존과 상생의 길 찾기 대화 연구용역	10,000,000	마포1번가연구단
15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조사 연구용역	20,000,000	마포1번가연구단
16	제2차 마포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1,340,000	환경과
17	마포구 문화예술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76,000,000	문화예술과
18	제5기(2023~2026)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49,884,000	복지정책과

연번	연구 용역명	계약금액	발주부서
19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40,909,090	여성가족과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	90,000,000	환경과
21	운동을 통한 치매 예방 사업 운영 및 연구 용역	234,300,000	생활체육과
22	마포유수지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 사업계획 변경 연구용역	30,900,000	문화예술과
23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생활실험실 지원 연구 용역	19,998,790	마포1번가연구단
24	마포구 2기 지역 사회 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조사 연구용역	21,340,000	마포1번가연구단
25	마포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15,550,000	노인장애인과
26	2021 마포구 사회조사 용역	99,000,000	기획예산과
27	2019 마포구 사회조사 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용역	17,000,000	기획예산과
28	마포구 협치 의제 온라인공론장 운영 관련 구민 여론조사 용역	2,200,000	마포1번가연구단
총 액		1,218,356,570	